

서귀포시 공고 제2026-238호

「2026년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통인(농감협,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미등록 선과장
- 과태료(감귤유통조례 위반) 및 지방세 체납 선과장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 '25년 감귤의무자조금 미납 선과장(유통인)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등

2. 지원 대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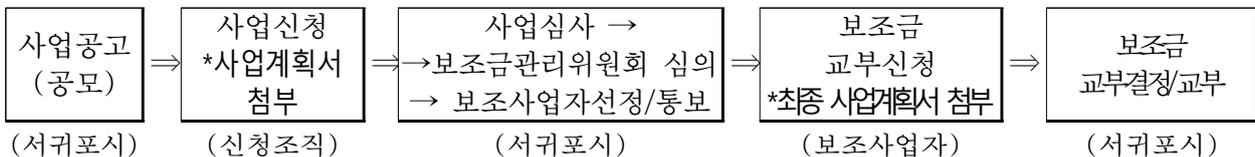
사업명	예산액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접수·문의처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140,000천원	60%	2026. 1 ~ 12월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22)

3. 신청 및 접수

- 가. 신청기간 : 2026. 1. 14.(수) ~ 1. 28.(수) (근무시간 내)
-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제1청사 서흥동 소재)
-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 각 1부.
- 마. 문의처 : 감귤유통과 ☎064) 760-27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지원대상 선정 조직)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골유통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과장 김용범	064-760-2700
		팀장 강봉수	064-760-2721
		주무관 이재호	064-760-2722

1

추진배경

-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과장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 등으로 감귤 유통 경쟁력 강화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월 ~ 12월
- 사업비: 총사업비 233,334천원(보조 140,000천원, 자부담 93,334천원)
- 지원내용: 감귤 유통시설 개보수 및 장비류 구입 지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 소재 감귤선과장이 등록 되어있는 유통인 (농·감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 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 신청 및 추진할 것

- 지원규모(보조금 기준)

구분	분야	지원내용	보조금지원 한도(천원)	비고
1	건축(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및 증·개축(신축 제외)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50,000	·공통: V.A.T 포함 금액 ·인허가비용 지원 제외 (취등록세 등 포함) ·바닥 포장, 도색, 출입문 교체(저온저장고 포함) 등은 제외
2	선별 ·포장 시스템	선별 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화 선별·포장 라인 교체 등		
3	유통 기계· 장비류	선별기·포장기·랩핑기·제함기· 지게차·자동계량기·계근대등	30,000	

□ 지원 한도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은 사업 분야별 지원내용 중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함.
- 단,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신청이 많을 경우 조직당 분야별 1개 세부 사업으로 제한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2026. 1. 14.(수) ~ 1. 28.(수)
- 신청장소: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류: 구비서류 목록 참조

※ 구비서류 목록

공통 서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붙임1>	⑥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② 사업계획서 <붙임2>	⑦ 회의록(본 사업신청 관련)
	③ 단체소개서 <붙임3>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④ 농업법인 구성원 현황(명부) <붙임4>	⑨ '24~'25년도 계통 출하실적 관련 증빙자료
	⑤ 견적서 2개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⑩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25년도 출하실적 분)
	⑪ (사업예정지) <u>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u> (※ 토지 또는 건물 임차 시 *사후관리기간 이상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또는 취득 기준 시설 개보수: 7년, 유통장비류: 5년	
⑫ (평가표 해당 시) 가공용 수매실적 및 사업장 재해보험 증명서 등 증빙서류		

추가 서류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출자명세서(또는 주주명부·주식상황변동명세서) •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작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 증명서(*농감협에서 발급) • 작목반 규약(회칙), 정관 등 • 출하 실적(계통출하 포함)
	농·감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4 지원대상 요건 및 제한 기준

□ 지원대상 요건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유통인 (농·감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9항(별표 6)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및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나.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 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미등록 감귤 선과장
- 최근 3년간('23 ~ '25) 감귤유통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그 이전 과태료를 공고일까지 체납하고 있는 선과장
- 심사평가표 배점기준에 의거 총점 40점 미만
- '25년도 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선과장(유통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통인
- 같은 해에 감귤 유통분야 지원사업(도 감귤유통과)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 불가
- 농업법인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과태료(감귤유통조례위반) 및 지방세 체납 유통인

5 세부일정 및 선정절차

- 대상자 공모 : 2026. 1. 14.(수) ~ 1. 28.(수)
- 대상자 선정 : 2026. 3월 예정
- 사업추진 : 2026. 3.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 2026. 12.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 계획 수립 통보 및 공모 → 사업계획서 자체심사 및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 사업 시행 및 완료·정산

6 대상자 선정 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7 사업추진 시 주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되지 않음
- 대상자 확정 후 지상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합의서 또는 사용동의서 등 제출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추진
 -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 ⇒ 나라(누리)장터를 통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야 함 (※부적격 업체와 계약 시 보조사업으로 시행 불가)

○ [사업 계획 변경]

- 변경사항(사업비, 계약방법(입찰·수의),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 발생 시 즉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서귀포시장의 사전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개 사업 1개 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시 예금주는 단체명으로 개설

※ 단체명으로 개설 못할 때는 대표자(단체명) 병기

예) ‘홍길동(00선과장, 작목반)’ 또는 ‘예금주 홍길동으로 하고 00선과장 보조금 전용 통장’ 으로 단체명 반드시 부기 명시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 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 건설공사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착공 전 착공 보고서(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도급 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물품 검수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 후(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해야 하며 취득한 시설, 장비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시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서를 첨부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4) 적용
 - ※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사후관리기간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사후관리 책임은 인계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있음
 -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을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될 수 있음

9 관련 법규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업계획서

1. 조직현황

○ 일반 현황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조합원수	
출자금액	원	출자자수	명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비고
m ²	조라인	m ²	m ²	대	대	

○ 최근 2년간 출하실적

품목별	2024년		2025년		출하 농가수 (호)	주요 출하처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만감류						
하우스감귤						

*주요 출하처: 전국 도매시장, 공판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 2026년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만감류				
하우스감귤				

2. 추진개요

- 위치 : *시설,장비 설치 주소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의 필요성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계획

세부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공 정 별			비고
					계약 예정일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사업비 집행 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자산취득비		
자부담		자산취득비		

4. 보조사업 효과

-
-
-

<붙임 4>

농업법인 구성원 명부(현황)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해당란체크)	출자액 (원)
대표	○○○	00.02.06	서귀포시 남원읍 중간산동로.	01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체등록	원

상 기 조합원(농업인) 명부는 사업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조합원 명부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조직명:

대표:

(직인)

2026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심사평가표

□ 조 직 명(대표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건축물	선과장이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음	여/부	필수	건축물대장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감귤 선과장 운영 실적 있음	여/부	필수	증빙서류 확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재(공고일 기준) 및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여/부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의무자조금	2025년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필수	납부확인서
	감귤유통관련 조례 등 위반	최근 3년간('23 ~ '25) 과태료 또는 그 이전 과태료 체납 없음	여/부	필수	행정확인
평가항목	사업예정지 소유여부	- 부지와 시설물이 모두 신청자 소유	15	증빙서류 제출	
		- 부지 또는 시설물 중 하나만 신청자 소유	10		
		- 부지와 시설물 모두 임대	5		
	조합원(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인원	- 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 인원 수 1인당 1점 (최대 25점)	25		증빙서류 (조합원 및 법인 명부 등)
	최근 2년간 ('24~'25) 매출실적	- 매출실적 1억당 1점(최대 20점) *작목반은 농·감협 기간별 정산서 첨부	20		증빙서류 제출
	'23~'25 동일 사업 보조금 수혜실적	- 최근 3년간 보조금 미수혜 조직	25	행정확인	
		- 최근 3년간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수혜	15		
		- 최근 3년간 보조금 5천만원 이하 수혜	5		
	25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실적	-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 실적 20톤 이상	15	증빙서류 제출	
		-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 실적 10톤 ~ 20톤 미만	10		
		-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 실적 5톤 ~ 10톤 미만	5		
	기타	- 사업장 재해보험 가입(화재 등)	5	증빙서류 제출	
		- 전년 신청 후순위 조직	5	행정확인	
- 2년간('24~'25) 계통출하 실적 있는 경우		5	증빙서류 제출		
점수 합계					

※ (지원제외) : 기본조건 미충족 및 점수 합계 40점 미만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대상자 선정

※ (동점자 처리) : ① 유통장비 보조금 수혜 내역이 없는 순
 ② 해당 조직 소속 참여 농업인이 많은 순
 ③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 실적 많은 순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